

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(경정)청구서					처리기간
					2개월
청구인	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	③ 사업자등록번호	
			-		
	④ 주소(거소) 또는 영업소			⑤ 전화번호	
⑥ 상 호					
신 고 내 용					
⑦ 법정 신고일			⑧ 최초 신고일		
⑨ 경정(결정)청구이유					
구	분	최 초 신 고		경 정(결 정) 청 구	
⑩ 세 목					
⑪ 과 세 표 준 금 액					
⑫ 산 출 세 액					
⑬ 가 산 세 액					
⑭ 공 제 및 감 면 세 액					
⑮ 납 부 할 세 액					
국세환급금 계좌신고		거래은행	은행 지점	계좌번호	
⑰ 환 금 받 을 세 액					
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 년 월 일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 </div> 세무서장 귀하					
※ 구비서류: 경정(결정)청구 사유 증명자료					수수료
					없 음

접수증(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(경정)청구서)					
성 명			주 소		
구 비 서 류	결정(경정)청구사유 증명자료 ()				접 수 자
					접 수 일 인

작성방법

1. 청구인란의 인적사항(①~⑥)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 다만,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()안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⑫ 산출세액: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.
3. ⑬ 가산세액: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,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4. ⑭ 공제 및 감면세액: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.
5. ⑮ 납부할 세액: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,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.
6. 국세환급금 계좌신고: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,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“계좌개설신고서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7.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구비서류(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)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:

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수정 지급조서, 당초분·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(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),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
 - 나.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:

당초분·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, 당초분·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(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),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
 - 다.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:

당초분·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,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